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퀴즈



‘연말정산 처음부터 끝까지’ 퀴즈

일시 : 2018. 1. 6. (토)

장소 : 경기도 부천 ‘덴탈에듀’ 강의실



문제 1 >>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번의 정답

X(불가능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받을수 있다.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	×	○	
	교 육 비	×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문제 2 >>

저의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가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번의 정답

○ (가능함)

네,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 부터 가능하고
2016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귀속분 부터는 공제 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세액 공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문제 3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3번의 정답

X(불가능함)

**아니오. 의료비 공제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중 다음의 비용은 공제
가 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비용, 외국 의료기
관 지출비용등**





문제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는 별도로 챙길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경, 보청기 구입 영수증의 경우 별도로 챙기는 대상인가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4번의 정답

0 (별도로 챙겨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1)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문제 5>>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5번의 정답 0 (받을수 없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6>>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16년에 가입하였고 '17.6.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6번의 정답
X(받을수 없습니다.)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
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
습니다.





문제 7>>>

신용카드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7번의 정답

0 (가능합니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문제 8>>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이다.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8번의 정답

0 (맞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문제 9>>

저희부모님이 공무원연금수급자이신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9번의 정답 0 (해당되면 받을수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수급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하여 해당이 되면 받을수 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

소득 요건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연금(공무원연금 및 개인연금 포함)이자·배당·기타소득 모두를 합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와 다른 점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란 재직 중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공무원연금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내용이 복잡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 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순으로 접속하면 'Y' 또는 'N'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Y'이고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10>>

연금저축 등을 넣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0번의 정답

0 (도움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연 400만원한도)에 대해서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





문제 11>>

**초중고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1번의 정답

0 (가능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초,중,고등학생
의 체험학습비 (연30만원)이 교육비 공제로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	----------	---	-------------





문제 12>>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가 되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2번의 정답 0 (됩니다)

여성 근로자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 조건이 만족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종합소득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설명: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 금액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봤더니 29,999,999.8원이 나오네요^^)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문제 1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해야 하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3번의 정답

X (아니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무신고자가 되며 가산세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된 경우는 개인이 5월에 별도 신고,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되지 않고 소득 합산통보 공문을 받는 경우나 세금공제 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함)





문제 14>>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4번의 정답

0 (받을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관계가 없다.

(의료비 항목은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음)





문제 15>>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5번의 정답

0 (받을수 있다.)

하지만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
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암때문에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
태에 있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
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다!

(기본공제 이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이다)





문제 16>>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6번의 정답

X (받을수 없다.)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

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

았기 때문에 제외된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도 의료비를 부담해야 공제 대상
이 된다.-세액공제의 의의)**





문제 17>>>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좋다?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7번의 정답

X (좋지 않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대중교통 · 전통시장: 30%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2억 원	300만 원 ('18. 1. 1. 이후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문제 18>>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나의 월세액, 공제받을 기회가 있다.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8번의 정답

0 (있다.)

세무서에 5년 이내에 경정을 요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신청은 **개인**이 국세청에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 변경 후 소득공제신고서, 월세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19>>

기부종류에 따라, 기부 물품에 따라 물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19번의 정답

0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름다운가게’등에 헌신 발, 헌옷 등을 가지고 가면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도 가능하다)





문제 20>>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0번의 정답

X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다.)

올해부터 초,중,고 현장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한도)는 교육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됨으로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2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1번의 정답

X (받을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중 영유아보육
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
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
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
이 아닙니다.





문제 2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
을 수 있나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2번의 정답

X (받을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23>>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3번의 정답

X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24>>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4번의 정답

0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25>>>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
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
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가요?

O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5번의 정답

0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며 나이스에도 이러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 26>>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둘다 같이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6번의 정답

0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700만원, 공제율 12%,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자는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27>>>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7번의 정답

0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	×	○	
	교 육 비	×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기부금부분



문제 28>>

올해 수술로 큰 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0 또는 X로 답을 말씀해주세요 ^^





문제 >> 28번의 정답

X (받을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조차 홈택스간소화자료로 제출하는 추세여서 이를 공제받을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여 주세요.^^

(이를 대비하여 서약서를 받는겁니다)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감사합니다. 퀴즈 끝~ ^^
기타문의는 mj19821003@ice.go.kr